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개정 2018.11.1., 2020.12.1., 2021.4.8.]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전주성심여자중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이하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의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루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 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8.]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0.12.1.>

제2장 생활지도위원회 <개정 2020.12.1.>

제4조【생활지도위원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1.>

②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생활인권안전부장, 교무부장, 교내계 또는 생활지도계 교사로 하고, 생활인권안전부장을 간사로 한다. 다만, 학생의 징계 시 당해 학년부장과 담임교사까지 포함한다. <개정 2018.3.9.>

③ 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생활인권안전부장이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⑤ 학교내의봉사 이하의 징계 사안은 생활인권안전부 교사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전문개정 2011.4.18.]

제5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개정 2019.8.20.)에 따라 종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관할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이관하되, 같은 법 제14조에 따

라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제6조 단서에 따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

[전문개정 2011.4.18.]

제6조 【학교폭력문제전담기구】 ① 제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업무담당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되,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문제를 인지한 경우에는 전담기구에 가해 및 피해 사실 확인 및 학교장의 자체해결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부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학교폭력문제를 자체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⑤ 그 외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문제 자체해결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따라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1.]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7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할 때 생활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자학자습】 ① 학생들은 강제로 학습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들은 자발적 동의에 의한 학습분위기 형성으로 진정한 학습권을 확보한다.
- ③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쓰며, 권장도서를 우선하여 읽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1.4.18.]

- 제9조 【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③ 학생들은 교내에서 낙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 제11조 【교우관계】** 교내에서 교우 간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 제12조 【폭력예방 및 신고】**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폭력이 발생하여 목격한 경우 반드시 전담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린다. <개정 2020.12.1.>
 1.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2.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3. 경찰청 학교폭력신고 117
 4.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5. 전라북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학생 동반자팀 273-1412
 6. 학교폭력 SOS지원단 1588-9128
 7. 교육청이나 학교의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8. 학교폭력문제전담기구 <개정 2020.12.1.>
 -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익명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 ④ 삭제 <2020.12.1.>
 - ⑤ 삭제 <2020.12.1.>

제13조 【이성교제】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성 간의 예절을 지키고 이성 간의 건전한 교제는 권장한다. <개정 2020.12.1.>

1. 남녀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2.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3.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 남녀학생 단들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순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순결교육과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 【동아리활동】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동아리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1. 동아리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그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자율동아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허가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2. 인가된 자율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3. 인가된 자율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학생은 동아리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전문개정 2011.4.18.]

제15조 【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를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1. 여가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2. 여가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하며, 이용수칙을 잘 준수한다.
3. 특별실 도우미학생을 반별 1명씩 지정하여 순번제로 관리 및 청소를 한다.
4. 생활지도담당자는 교내의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한다.
5.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6조 【용의사항】 ① 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한다. 다만,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2. 복장에 부착물(교표)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3.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 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4. 삭제 <2021.4.8.>
 5. 삭제 <2021.4.8.>
 6. 삭제 <2021.4.8.>
 7. 삭제 <2021.4.8.>
 8. 삭제 <2021.4.8.>
- ② 동·하·춘추복 착용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기상관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1. 동복 :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정 2020.12.1.>
 2. 하복 :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정 2020.12.1.>
 3. 춘추복 :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정 2020.12.1.>

제17조 【학급내 봉사활동】 학급내 봉사활동(학급도우미)학생의 근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1. 행사,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하여 담당교사의 지시를 받고 학급에 전달 또는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
2. 학급환경 정돈, 출결 점검, 학급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3.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개정 2007.4.13.>
4.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5. 학급내 봉사활동은 다른 학생보다 일찍 등교하여 임무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 후에 하교한다.
6. 학급내 봉사활동은 학급실장, 부실장, 학생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학생 전원이 학급마다 2명씩 연속 1주일간 봉사한다. 다만, 학급도우미의 제외 범위는 담임교사가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전문개정 2011.4.18.]

제18조 【장애학우 및 기타 교내생활】 ①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하며,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배려할 수 있다.

- ② 기타 교내생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생활인권안전부의 허가를 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교사의 입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전체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전문개정 2016.7.1.]

제2절 교외생활

제19조 【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은 청소년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외의 단체·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여야 할 때 학교의 장의 사전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전문개정 2013.4.1., 2017.3.31.]

제20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전문개정 2013.4.1., 2017.3.31.]

제3절 정보통신

제21조 【사이버 생활】 예절 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전문개정 2013.4.1., 2017.3.31.]

제22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삭제 <2021.4.8.>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하여 활용한다.
3. 교내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전문개정 2017.3.31.]

제4장 생활교육 <개정 2020.12.1.>

제1절 생활지도

제23조 【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매월 4일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
6.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중전 제4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12.1.>]

제24조 【진로지도】 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1.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3. 담임교사는 매월 1회 이상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4.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5.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6.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수시로 실시한다.

제25조 【교외 생활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26조 【벌】 학생 비하·모욕하는 언어폭력이나 신체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줌으로써 벌을 행하는 행위인 체벌은 전면 금지하되,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교교육에 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 혹은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지도는 상담, 기타 교육적 활동 등을 통한 생활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제2절 학생징계 <개정 2020.12.1.>

제27조 【징계의 원칙】 징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1. 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징계는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28조 【징계의 심의 및 의결】 선도위원회는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1.>

제29조 【선도위원회의 소집】 선도위원회는 학생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한다.

제30조 【선도위원회의 사안 설명】 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1조 【재심의 부의】 학교의 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산정】 징계의 종류에 따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다만, 기간은 학교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1. 학교내의봉사 :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3~10일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6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가정학습 :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일정 기간 동안 부모와 연계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8.3.9., 2020.12.1.>
5. 출석정지 : 1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최대한 30일까지 명할 수 있으며, 연속할 수 없다. 다만,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12.1.>
6. 전학권고 및 학교알선 : 상위 징계 후에도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학을 권고하고 학교를 알선해 줄 수 있다.

제33조 【징계의 방법】 ① 학교내의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생활인권안전부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개정 2020.12.1.>

-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의 행정기관·공공기관·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시설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교육을 한다.
- ④ 가정학습은 반드시 부모가 함께하여야 하고, 처분 기간에 학습한 내용 및 학교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8.3.9., 2020.12.1.>
- ⑤ 학생선도규정 제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계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0.12.1.>
- ⑥ 학생선도규정 제9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내의봉사와 사회봉사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1.>

[전문개정 2009.4.3., 2011.4.18.]

제34조 【징계의 세부 사항】 징계의 종류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학교내의봉사
 - 가. 환경미화 작업
 - 나. 교사들의 업무 보조
 - 다. 교재·교구 정비
 - 라. 학교도서실 도서 정비 <개정 2020.12.1.>
2. 사회봉사
 - 가.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다.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라. 사회봉사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3. 특별교육이수

- 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라. 부적응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마.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 대화의 광장,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바. 특별교육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12.1.>
 - 사. 특별교육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4. 가정학습은 학부모가 징계 기간에 학생과 함께하여야 하고, 학교에서는 수시로 학생과 통화 및 방문하여 가정학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징계대장에는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개정 2020.12.1.>
 5. 출석정지는: 학생 및 학교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사안에 따라 선도위원회에서 1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연 최대 30일까지 명할 수 있으며, 연속할 수 없다. 다만, 그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12.1.>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학권고와 학교알선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전문개정 2009.4.3., 2020.12.1.]

제35조【심의 확정】 징계 사안에 관하여 제30조에 따라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의 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교무회의에 부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전문개정 2009.4.3.]

제36조【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처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전문개정 2009.4.3.]

제37조【징계 유보】 특별교육이수 이하의 징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중인 자는 정기고사 기간을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1.>

제38조【징계 경감】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징계의 처분 경감 및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8.]

제39조 【징계 해제】 학교의 장은 징계 기간 만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징계 해제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학생선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 해제 전에 생활인권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

[전문개정 2011.4.18.]

제40조 【추수지도】 담임 또는 상담교사는 징계 처분 및 해제 학생을 일주일 간격 또는 그 이상의 기간 간격으로 4회 이상 상담을 하고 상담일지를 누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

[전문개정 2011.4.18.]

제41조 【징계의 기준】 그 외 기준, 방법 등 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의 학생선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

[전문개정 2011.4.18.]

[종전 제59조는 제41조로 이동 <2020.12.1.>]

제5장 보칙

제42조 【규정의 개정절차】 이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교감으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¹⁾를 구성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여 공포한다. 다만,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

[전문개정 2011.4.18.]

부칙 <2004.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 각 항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7조 다)항의 본문 개정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교무부장, 연구부장, 생활인권안전부장(간사)을 교원위원으로, 학생회 회장, 부회장 2명, 가톨릭학생회장(종교부장)을 학생위원으로, 학부모 3명을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7조 사)항의 본문 삭제

부칙 <2009.4.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 각 항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본문 개정
- ② 제60조(상벌점제)부터 제74조까지의 본문 신설

부칙 <2011.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 각 항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2조의 본문 개정
- ② 제4조, 제5조, 제8조, 제14조, 제17조, 제30조, 제51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75조, 제77조, 제78조, 제84조, 제87조, 제88조의 본문 개정
- ③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의 본문 삭제
- ④ 제59조부터 제72조까지의 전조 부속

부칙 <2013.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 각 항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본문 개정
- ② 제26조(기타)의 본조 신설

부칙 <2016.7.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 각 항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18조(장애학우 및 기타 교내생활) 및 제30조(통신기기 관리)의 본문 개정

부칙 <2017.3.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 각 항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19조(수업일수)부터 제26조(기타)까지의 본문 삭제
- ② 제2절(시상)의 본문 삭제

부칙 <2018.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 각 항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4조제2항의 본문 개정 <개정 2018.3.9.>
- ② 제50조제4항(가정학습) 및 제51조제4항(가정학습)의 본문에서 “출석인정”을 “미인정결석”으로 변경함. <개정 2018.3.9.>
- ③ 규정 내 “사고결석”을 “무단결석”으로 용어를 일괄 변경함. <개정 2018.3.9.>
- ④ 제74조제2의1항(별점 기준안 상세내용)의 본문 일부 삭제 <개정 2018.11.1.>

부칙 <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학교생활규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 제2장,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제20조, 제4장,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4장제2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개정한다.
2.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제23조부터 제40조까지, 제60조부터 제74조까지를 삭제한다.
3. 종전 제41조부터 제59조까지는 제23조부터 제41조까지, 제75조는 제42조로 이동한다.
4. 규정 내 “무단결석·조퇴·결과·외출 등”은 “미인정결석·조퇴·결과·외출 등”으로 일괄 변경한다.

부칙 <2021.4.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학교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22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 별지

[별표] 학생선도규정

[별표]

학생선도규정

[개정 2018.11.1., 2020.12.1., 2021.4.8.]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전주성심여자중학교 학생선도규정(이하 “학생선도규정”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20.12.1.>

제2조(학생선도의 원칙)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② 학생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 위주로 처리한다.

제2장 선도위원회

제3조(구성) ① 학생들의 선도 및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1.>

②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생활인권안전부장, 교무부장, 교내계(생활지도계)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 2020.12.1.>

③ 교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④ 생활인권안전부장은 부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전문개정 2011.4.18.]

제4조(기능) 위원회는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심의한다.

제5조(진술)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선도담당자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부모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1.>

제7조(재심)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필요에 따라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기록)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학생선도담당자(교내계 또는 생활지도계)가 기

록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3장 징계

제9조(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개정 2020.12.1.>

1. 훈계 : 당해 사항을 적발한 교사가 즉시 또는 별도의 시간을 정하여 훈육·지도
2. 학교내의봉사 : 7일 이내의 기간
3. 사회봉사 : 3~10일 이내의 기간
4. 특별교육이수 : 6일 이상의 기간
5. 가정학습 : 학교의 장이 허가한 일정 기간 <개정 2018.11.1.>
6. 출석정지 : 10일 이내의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신설 2011.4.18.> <개정 2020.12.1.>
7. 전학권고 및 학교알선 : 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시행 <신설 2011.4.18.> <개정 2020.12.1.>

제10조(방법)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다만,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일반학생에 대한 사안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로 재발, 제2차 피해 및 유사한 피해를 방지한다. <개정 2020.12.1.>

1. 훈계
 - 가. 각종 사안이 경미한 경우 적발교사가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지도한다.
 - 나. 지도내용을 지도일지에 기록하고 반성문을 받아 비치한다.
2. 학교내의봉사
 - 가. 등교시켜 수업을 받으며 출석으로 처리하되, 생활지도담당자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의 봉사를 하여야 한다.
 - 나. 필요한 경우, 생활지도담당자는 지도일지를 작성하고, 당해 학생으로부터 반성문을 받아서 비치한다.
 - 다. 학교내의봉사 기간 만료 후, 필요에 따라서 성직자(수도자) 또는 상담교사와 상의하여 일정기간에 상담을 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일지에 기록한다. <개정 2020.12.1.>
3. 사회봉사
 - 가. 출석으로 처리하되, 교육감이 지정·위탁한 지역의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봉사를 하게 한다.
 - 나. 사회봉사 기간 중 반성문, 봉사활동 및 특별과제물 등을 생활인권안전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다. 사회봉사 기간 만료 후, 필요에 따라 성직자(수도자) 또는 상담교사와 상의

하여 일정기간 동안 상담을 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일지에 기록하도록 한다.

4. 특별교육이수

가. 출석으로 처리하되,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또는 교육감이 위탁한 기관에서의 교육이나 상담치료 및 개별교육을 6일 이상 이수하게 한다.

나. 특별교육이수 기간 중 반성문, 특별교육내용, 특별과제물 등을 생활인권안전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가정학습

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12.1.>

나. 학교에서는 수시로 학생과 통화 및 방문하여 가정학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징계대장에 관련한 사항·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6. 출석정지 <신설 2011.4.18.>

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12.1.>

나. 학생 및 학교에 심각한 피해 입힌 경우, 사안에 따라 위원회에서 1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연 최대 30일까지 명할 수 있으며, 연속할 수 없다. <개정 2020.12.1.>

다. 처분 기간에 가정학습보고서를 매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에서는 수시로 통화 및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1.>

7. 전학권고 및 학교알선 <신설 2011.4.18.>

가. 위원회의 처분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11조(절차) 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학생선도담당자의 진상 조사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2조(결정) ① 학교의 장의 결재완료일로부터 징계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② 징계가 처분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하여 당해 학생의 선도에 협조하도록 한다.

③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이라도 정기고사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제13조(징계의 운영) ① 모든 징계는 반드시 학부모를 내교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 징계의 처분 여부와 징계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내의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특별교육이수를 하여야 할 학생에 관하여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하여 장기간의 특별교육이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당해 학생의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학부모는 이행하여야 하고,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의 학부모에게 가정학습을 명하여 일정 기간에 학교로부터 격리하여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제14조(기간 조정) 학교의 장은 징계 기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 담임교사와 생활지도담당자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징계의 기간을 경감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해제) ① 징계 해제 학생은 앞으로 학칙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생활인권안전부장에게 제출하여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4.4.>

② 징계처분 후 교육환경을 바꾸어 주기 위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여 같은 학교군 내의 타교로 전학할 수 있다. <신설 2016.4.4.> <개정 2020.12.1.>

제16조(추수지도) ① 학교의 장은 징계가 해제된 학생에게 담임교사 외 1명의 교사를 정하여 개별지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② 징계가 해제된 학생은 학교생활 규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지속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1.>

1. 학교내의봉사 : 4회 이상
2. 사회봉사 : 6회 이상
3. 특별교육이수 : 10회 이상

[제목개정 2020.12.1.]

[중전 학교생활규정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이동 <2020.12.1.>]

제4장 교내생활

제17조(교내생활) 교내생활에서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1. 교복 <개정 2011.4.18., 2018.11.1.>
 - 가.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 나. 교복은 동복, 간복, 하복으로 이루어진다.
 - 다. 삭제 <2021.4.8.>
 - 라. 삭제 <2021.4.8.>
 - 마. 삭제 <2021.4.8.>
 - 바. 삭제 <2021.4.8.>
2. 신발 <개정 2011.4.18.>

가. 가급적 흰색, 검정색의 기본형 운동화를 신도록 권장하며, 모든 색상의 신발을 허용한다.

나. 삭제 <2021.4.8.>

다. 삭제 <2021.4.8.>

3. 삭제 <2021.4.8.>

4. 삭제 <2021.4.8.>

5. 삭제 <2021.4.8.>

6. 기타

가. 교육활동 및 학교생활에 불필요한 휴대폰²⁾은 금지한다. <개정 2018.11.1., 2021.4.8.>

나. 제1호 및 제2호의 세부 사항은 당해 학년도 학생회의 발의와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정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6.4.4.> <개정 2020.12.1., 2021.4.8.>

[전문개정 2013.4.1.]

제5장 교외생활

제18조(교외생활) 교외생활에서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1. 교외생활에 관하여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학생다운 생활을 한다.
2. 부득이한 경우 외에 밤(12시) 외출을 삼가야 한다.
3. 유해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4. 본교 외의 단체·대회에 방문 또는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1.>
5. 허가되지 않는 곳에서의 불법 과외를 받는 행위는 금한다.

제6장 징계의 세부 기준 <개정 2020.12.1.>

제19조(징계의 세부 기준) 징계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1. 훈계
 - 가.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나.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다. 수업 중 핸드폰(휴대폰) 벨이 울린 학생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속하는 행위를 한 학생 <개정 2020.12.1.>
2. 훈계 또는 학교내의봉사

2) 교육활동 및 학교생활에 불필요한 휴대폰은 고대기 등의 전기·전열 기기, 라이터 등의 발화·인화·점화 기구, 포커·화투 등의 사행성·도박성 도구 등을 뜻한다. <신설 2021.4.8.>

- 가.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나.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다. 언행이 불손한 학생
 - 라. 인원점검 시 대리로 대답한 학생
 - 마.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 바. 학교 출입 시 월장한 학생
 - 사.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아. 미인정결석·지각·조퇴·결과를 한 학생 <개정 2020.12.1.>
 - 자.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차. 도박을 한 학생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기준에 속하는 행위를 한 학생 또는 동일 행위를 계속 반복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한다. <개정 2020.12.1.>
3. 훈계, 학교내의봉사 또는 사회봉사
- 가.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나.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다. 욕설을 남용하거나 싸움을 한 학생
 - 라. 불량서적(음란서적)을 소지하거나 탐독한 학생
 - 마.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 바. 불량동영상물(미디어파일 등)을 소지하거나 이를 시청한 학생
 - 사. 학교의 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기준에 속하는 행위를 한 학생 또는 동일 행위를 계속 반복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한다. <개정 2020.12.1.>
4. 학교내의봉사 또는 사회봉사
- 가.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나. 미인정결석·지각·조퇴·결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개정 2020.12.1.>
 - 다. 타인을 구타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학생
 - 라. 계속하여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마. 계속하여 도박을 한 학생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에 속하는 행위를 한 학생 또는 동일 행위를 계속 반복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한다. <개정 2020.12.1.>
5. 학교내의봉사,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
- 가. 금지된 과외수업을 받은 학생
 - 나.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 다. 수업을 거부한 학생
 - 라.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마.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미인정결석을 한 학생 <개정 2020.12.1.>
- 사.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 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자.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 차.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 카. 이유 없이 상, 하급생 간에 폭력을 행한 학생
- 타.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
- 파. 금품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하.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거.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 너. 불법 집회 또는 불량모임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더. 불법 티켓을 강매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 러. 가목부터 더목까지의 기준에 속하는 행위를 한 학생 또는 동일 행위를 계속 반복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한다. <개정 2020.12.1.>
- 6. 학교내의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선도처분
 - 가.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케 한 학생
 - 나. 가목의 기준에 속하는 행위를 한 학생 또는 동일 행위를 계속 반복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한다. <개정 2020.12.1.>
- 7.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
 - 가. 시험을 거부한 학생
 - 나.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0일 이상 미인정결석한 학생 <개정 2018.3.9., 2020.12.1.>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속하는 행위를 한 학생 또는 동일 행위를 계속 반복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한다. <개정 2020.12.1.>
- 8.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선도처분
 - 가. 공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 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개정 2020.12.1.>
 - 다. 교사에게 불경한 언동을 한 학생
 - 라.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불응한 학생
 - 마. 사법기관에 구속 석방된 학생
 - 바.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사. 집단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 아. 금품을 강탈한 학생

- 자. 허가 없이 클럽(동아리)을 조직·운영하여 학칙을 위반한 학생
 - 차.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 학생
 - 카.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기준에 속하는 행위를 한 학생 또는 동일 행위를 계속 반복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한다. <개정 2020.12.1.>
9. 특별교육이수 또는 가정학습 <개정 2016.4.4.>
- 가.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계속하여 불응한 학생
 - 나.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 다.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라. 흡연, 음주, 도박,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계속하여 상습적으로 반복한 학생
 - 마. 정치관여 행위,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에 속하는 행위를 한 학생 또는 동일 행위를 계속 반복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한다. <개정 2020.12.1.>
10. 출석정지
- 가. 학생 및 학교에 심각한 피해 입힌 경우, 사안에 따라 위원회에서 출석정지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 나. 처분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12.1.>
11. 기타
- 가.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동일 징계를 처분 받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개정 2020.12.1.>
 - 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세부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20.12.1.>

제7장 보칙

제20조(규정의 개정 절차) 이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생활인권안전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회의에서 교감을 포함한 재적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제21조(기타 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안의 처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0.12.1.>

부칙 <2004.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학생선도규정 일부를 다음 각 항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3조, 제17조제1항, 제2항, 제5항의 본문 개정
- ② 제9조제6항 및 제7항,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의 본문 신설
- ③ 제17조제4항, 제6항가)호의 본문 삭제

부칙 <2012.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학생선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본문 개정 및 삭제

부칙 <2013.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학생선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본문 개정

부칙 <2016.4.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학생선도규정 일부를 다음 각 항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15조제1항의 본문 개정, 제15조제2항의 본문 신설
- ② 제17조제6항나)호의 본문 신설
- ③ 제19조제9항의 본문 개정

부칙 <2016.7.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학생선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17조제4항의 본문 개정

부칙 <2018.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학생선도규정 일부를 다음 각 항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3조제2항 및 제9조제5항의 본문 개정
- ② 제17조제1항 및 제6항가)호의 본문 개정
- ③ 제17조제1항바)호의 본문 삭제 및 전호 부속

④ 제17조제2항다)호의 본문 신설

부칙 <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학생선도규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9조 및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5조제2항,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개정한다.
2. 종전 학교생활규정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이동한다.

부칙 <2021.4.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학생선도규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17조제6호가목·나목을 개정한다.
2. 제17조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같은 조 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한다.
3. 제17조제6호가목에서 ‘교육활동 및 학교생활에 불필요한 휴대품’의 주석을 신설한다.